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51337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 판 경 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3나432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5133700 판결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4.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유호

5. F

피고 2,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이원희

피고 2, 5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68,832,348원 및 그 중 165,121,828원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2022. 8. 18.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E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D,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D,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E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832,348원 및 그 중 165,121,828원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이 사건 2022. 7. 2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2021. 5.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68,832,348원 및 그 중 165,121,828원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이 사건 2022. 7. 2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F와 피고 C 사이에 2021. 6.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7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F는 원고에게 78,000,000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3.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와 신용보증기간 2014. 8. 13.(이후 2022. 8. 5.로 변경)까지,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이후 162,000,000원으로 변경)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A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5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등의 경우에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는 2021. 3. 31.부터 국세를 체납하다가 2022. 1. 24. 수원회생법원 2022하합109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22. 3. 24.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 선임되었다.

라. A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22. 7. 18. 중소기업은행에 165,121,82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으로 3,710,52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와 피고 C는 대지급금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율은 연 8%이다.

마. 피고 C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2. 채권최고액 133,2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21. 5. 27.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E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도 마쳤다.

바. 피고 D는 2021. 5. 28. 피고 C와 사이에 G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55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C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E가 운영하는 H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고 C의 배우자 피고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50,000,000원, 임대기간은 2021. 6. 11.부터 2022. 6.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F는 2021. 6. 4.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 F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2021. 6.초 주식회사 I(이하 'I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I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설정액을 326,4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행은 2021. 6. 8.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였고, 2022. 5.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근질권설정액 전액을 임차인에 우선하여 I은행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자. 피고 D는 2021. 6. 11. I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72,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6. 14. 피고 F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5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차.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1. 6. 1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I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I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I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카. 피고 D는 피고 F로부터 수령한 위 임대차보증금, I은행 대출금 및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40,000,000원 등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마련하였고, 2011. 6. 11.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4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원 중 약 320,000,000원은 피고 C가 아닌 법무법인 J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위 마항 기재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같은 날 마항 기재 중소기업은행 및 피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피고 D는 2021. 7. 5. 피고 C에게 나머지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78,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타.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피고 F에게 2022. 3. 1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2. 6. 10. 18,000,000원을 F에게 반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72,000,000원을 I은행에 반환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중 320,000,000원이 피고 F에게 반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 13, 14호증, 을나 제3, 4호증, 을다 제3 내지 5, 7 내지 15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파산관재인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A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 주장의 위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법 제424조).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에 의한 파산절차 참가가 아닌 이행소송으로 파산채권에 관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A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2. 3. 24.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으며, 원고가 A에 대하여 구하는 구상금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파산절차 참가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파산관재인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65,121,828원 및 대지급금 3,710,520원의 합계 168,832,348원(= 165,121,828원 + 3,710,5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65,121,82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2. 7. 19.부터 이 사건 2022. 7. 2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8. 18.까지는 약정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21. 5. 28. 피고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21. 3. 31.부터 A가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약 8개월만인 2022. 1. 24. A가 파산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대위변제가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도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수익자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다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와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서로 알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전에 K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당시 거주하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위 사무실에 새로이 임대할 부동산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그러던 중 중개보조인 L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여부를 비로소 고려하게 된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적법한 중개하에 체결되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에 따라 정하여졌고, 그 대금이 모두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매매대금으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는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사유가 등기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피고 D와 피고 F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F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대출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임대인인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D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피고 C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E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A와의 거래관계 하에 계속적으로 원자재를 공급해 왔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A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 하에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 E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피고 E로부터 원자재를 계속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와 피고 C 사이에 2021. 5. 27.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다만, 원고는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하고 있어 위 부분에 대하여만 취소한다), 피고 E가 사해행위인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가로 피고 C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50,000,000원은 위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E로 하여금 그 말소를 위한 변제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E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5.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1. 6. 11. 받은 금원 중 78,000,000원을 피고 F에게 증여하였다. 위와 같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D에게 78,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D,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경기도 시흥시 [ ] [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5층 [ ]호 117.25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시흥시 [ ] 대 25492.1㎡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5492.1분의 97.3781